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시행(2005. 11. 11.), (2006. 3. 23.),(2008. 1. 8.),(2008. 2. 29.),(2008. 9. 25.),(2009. 7. 7.) 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부패영향 평가결과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제9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축제한 규정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화 기여**(안 제9조제1항)**

다. 군 계획시설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안 제10조)**

라. 개발행위허가 기준(경사도 10°→25°)을 인근 시·군의 허가 기준으로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투자유치에 기여**(안 제15조, 제18조, 제26조)**

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개선(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기준)하여 부패방지 예방에 기여코자 함**(안 제19조제1항)**

바.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시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안 제25조제2항)**

사.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가능토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안 별표19)**

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및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들을 보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하여 중소기업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안 제21～23조, 제28조, 제46조, 제48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60～61조, 별표 3～10, 별표 12～20, 별표 22～23, 별표 25)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09.07.30 ~'09.08.18)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 도시계획과-3775(2009.09.27)호

6.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부서와 협의완료
○ 예산관련 : 해당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9조제2호 중 “제7호”를 “제4호”로하며, “10분의1”을 “10퍼센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10분의1”을 “30퍼센트”로 하고,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9호 내지 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10.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11. 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0조 중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를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 그 조례에 의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제15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제18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중 “50”을 “60”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 중 “10”을 “25”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상은「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지역

제19조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1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22조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하고, “녹지지역”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다.

제23조 중 “별표1”을 “별표1의2”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호 및 2호 중 “1”을 “5”로 하고, 동조제3호 중 “1”을 “3”으로 하며, 동조제4호 중 “10”을 “25”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산림법 제91조제1항”을 “「산지관리법」제38조”로 한다.

제4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타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으로 한다.

제5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한다.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 중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내”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내지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내지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및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개정 2007. 8. 2>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개정 2007. 8. 2>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4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7. 8. 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5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 차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7. 8. 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6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개정 2007. 8. 2>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9조제7호관련)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 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하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개정 2007. 8. 2>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7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개정 2007. 8. 2>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9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후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0】 <개정 2007. 8. 2>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0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개정 2007. 8. 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2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개정 2007. 8. 2>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3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나.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개정 2007. 8. 2>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4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5】 <개정 2007. 8. 2>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5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 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개정 2007. 8. 2>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6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개정 2007. 8. 2>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8】 <개정 2007. 8. 2>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8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 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개정 2007. 8. 2>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19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 자목(1) 부터 (4)까지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6)「폐기물 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8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개정 2007. 8. 2>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0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22】 <개정 2007. 8. 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3】 <개정 2007. 8. 2>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3호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19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되,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8 제2호 자목 및 별표 19 제1호 차목 및 제2호 카목의 공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5】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8조제1호 관련)

1.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가목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머.「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그 밖에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개발진흥지구 지정 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생략) <신 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 ---------- ---------- ---------- -----국토해양부장관---------- ---------- ----------. 1. (현행과 같음) 2. 가구(----------제4호---------- ---------- 10퍼센트 ---------- 3. ---------- 30퍼센트 ----------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건축선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10.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11.법률 제665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2.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 ---------- ---------- ----------성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에 의한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함이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 그 조례에 의한다.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작물재배용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및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퇴비장의 설치 3.~4. (생략)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신설>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60---------- ----------60----------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 25----------, ---------- 25---------- ---------- ----------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임상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지역
② (생략)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별표1의2 ---------- ----------.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22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토지분할 제한면적)** ---------- 별표1의2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제23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23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별표1의2 ---------- ---------- ----------.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생략) ②별표 19 제2호타목 및 별표 23 제2호타목(별표 19 제2호 타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 ---------- ---------- ---------- ---------- ---------- ---------. 1. ------ 5---------- ---------- 2. ------ 5---------- ---- 3. ---------- 3---------- ---------- 4. ------- 25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 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제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산지관리법」 제38조----------.
제4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3. (생략) <신설>	**제4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3. (현행과 같음)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도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생략) <신설>	**제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기타개발진흥지구 :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현행과 같음) 3. 주거개발진흥지구 : 별표25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 6. (생략)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농지법」 제32조----------.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생략)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주택법」----------.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현 행	개 정 안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6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 ---------- ---------- ----------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내 ---------- ---------- ----------. 1. ~ 2. (현행과 같음)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에 대한 용적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적율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생략)	**제61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 ---------- ---------- ---------- ---------- ---------- ---------- ---------- ----------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 ---------- ---------- ---------- ---------- ---------- ---------- ----------. ② (현행과 같음)